

한국산업기술시험원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요청 회신

- 1.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-352(2024.03.06.)호 관련입니다.
- 2.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(안전인증의 취소 등) 및 제20조(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), 제27조(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) 및 우리 원 안전인증 업 무절차서 제5조 제6항(인증의 유지 및 취소 등)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조치 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안전성조사 결과 행정조치 현황 1부. 끝.

한국산업기술시행원장

수신자 국가기술표준원장(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),국가기술표준원<mark>창(제</mark>舊<mark>約 절관</mark>리과장),국가기술표준원장(제품안 전정보과장),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,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,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,관세청장, 서울특별시장,경기도지사,고양시장,부천시장

2024. 4. 8. 센터장 팀원 홍봉석 박정호

협조자

(2024. 4. 8.) 시행 인융2120-00689 접수 녹색에너지과-8892 (2024. 4. 8.)

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(충무공동)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 08389

/ http://www.ktl.re.kr

인증융합센터

전화 055-791-3401 /전송 / 대국민 공개 055-791-3329 / hongbs@ktl.re.kr

개인정보보호 꼭 지켜야 할 우리의 "약속" 입니다